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1. 의결주문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(법률 제16547호, 2019. 8. 27. 제정·공포, 2020. 8. 28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양봉 부산물의 범위에 꿀벌의 집, 꿀벌의 유충·번데기·성충을 추가함
(안 제2조)

나. 법 제5조에 따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·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
(안 제3조)

(1) 농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, 시·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

(2)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게 함

(3) 농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목표 달성도 등의 기준에

따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

다. 법 제6조에 따른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고, 실태조사 방법은 현지조사, 설문조사,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정기조사는 종합계획 수립 연도에 하고, 수시조사는 필요할 때 하도록 함(안 제4조)

라.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요건,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 등을 정함(안 제5조)

- (1)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
- (2)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강사료와 수당,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- (3)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별표 1로 정함
- (4)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

마.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절차·방법·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
- (1) 지정취소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에 “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, 시정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”를 추가함
- (2) 시정조치 명령 방법과 명령 이행 방법을 정함

(3)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양성기관의
장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

(4)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기준을 별표 2로 정함

바. 농식품부장관의 권한(실태조사,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, 전문
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접수, 연구 및 기술개발, 밀원식물 확충)을 농진
청장(산림 분야는 제외)과 산림청장(산림 분야)에게 위임함(안 제7조)

사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아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(안 제9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0. 5. 8. ~ 6. 18.)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양봉 부산물의 범위)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나목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꿀벌의 집
2. 꿀벌의 유충·번데기·성충

제3조(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과 같은 법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,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

반영하여야 한다.

1. 종합계획과의 적합성
2. 목표 달성도
3.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

제4조(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)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양봉농가가 사육하는 꿀벌의 종류 및 꿀벌 사육현황
2.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·부산물 판매량 및 판매금액
3. 양봉농가의 생산물 유통현황
4. 양봉 산물·부산물의 생산업체·가공업체·유통업체 현황
5. 밀원식물의 지역별·종류별 현황
6. 그 밖에 양봉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은 현지조사, 설문조사,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,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,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.

제5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

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강사료와 수당
2.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
3.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.

제6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) ①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

2. 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할 경우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.

1. 법 위반 내용

2. 시정을 명하는 내용

3.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기한

4. 시정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

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, 그 명한 사항을 이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내용을 보고해야 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7조(권한의 위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(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)

2.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·지정

취소·시정명령(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)

3.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(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)

4.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(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)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(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)

2.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·지정 취소·시정명령(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)

3.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(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)

4.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(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)

5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밀원식물(수목류에 한한다)의 확충

제8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에 관한 사무

2. 법 제14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

제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(제5조제5항 관련)

1. 시설과 설비

- 가. 강의실: 면적[내벽 간 바닥면적을 실측(實測)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
- 나. 실습실: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
- 다. 실습양봉장: 비가림시설(높이2m×폭3m×길이10m) 1개 이상과 검사도구 및 장비를 갖추어 것
 - 검사도구: 내검칼, 봉솔, 혼연기, 복면포
 - 장비: 꿀 채취기, 화분채취기, 여왕벌생산틀, 로열젤리생산틀
- 라. 화장실: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어 있으며,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일 것
- 마. 급수시설: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
- 바. 조명시설: 야간 강의 시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
- 사. 소방시설: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것

2. 교육과정: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할 것

- 가. 꿀벌 관리 및 꿀벌 품종개량 과정
- 나. 병해충 및 농약으로부터의 꿀벌 보호 과정
- 다. 양봉 산물·부산물의 생산 및 가공 이용 과정
- 라. 밀원식물 및 화분매개 과정
- 마. 양봉산업의 경영 과정

3. 교육시간: 교육시간(실습을 포함한다)은 연 96시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할 것

4. 강사: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
- 가.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한 학기 이상 강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
- 나.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
5. 평가관리: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평가할 것

[별표 2]

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(제6조제5항 관련)

1. 일반 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다. 행정처분기준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명하고,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한다.

2. 개별 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7조 제4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	법 제7조 제4항제2호	경고	시정명령	지정취소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	법 제7조 제4항제3호	경고	시정명령	지정취소
라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7조 제4항제4호	시정명령	지정취소	
마.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	법 제7조 제4항제5호	시정명령	지정취소	
바. 시정을 명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	법 제7조 제4항제5호	지정취소		

[별표 3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·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	법 제20조제1항	20	30	30
나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20조제1항	15	20	30
다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20조제1항	15	20	30